

관리번호

(2020년 기준)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부
분리 과세	부
거주지국	대한민국
거주지국 코드	KR

① 기본사항

① 성명	이***	② 주민등록번호	861127-*****
③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010-4744-****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장의무	02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⑨ 신고유형	20 ⑪자기조정 ⑫외부조정 ⑬성실납세 ⑭성실신고확인 ⑮간편장부 ⑯추계-기준율 ⑰추계-단순율 ⑮분리과세 ⑯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01 ①정기신고 ②수정신고 ③기한후신고 ④경정청구 ⑥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③ 세무	⑯성명 박***	⑯사업자등록번호	220-01-832**	⑯전화번호	02-3012-****
대리인	⑯대리구분 01 ①기장 ②조정 ③신고 ④성실확인	⑯관리번호	T-572**	⑯조정반번호	1-03**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9)	93,308,459		
소 득 공 제		(20)	11,762,538		
과 세 표 준 (⑯ - ⑯)		(21)	81,545,921	(41)	0
세 율		(22)	24.0	(42)	0.0
산 출 세 액		(23)	14,351,021	(43)	0
세 액 감 면		(24)	0		
세 액 공 제		(25)	756,054		
결정세액	종합과세 (⑯ - ⑯ - ⑯)	(26)	13,594,967	(44)	0
	분리과세	(27)	0	(45)	0
	합계 (⑯ + ⑯)	(28)	13,594,967	(46)	0
가 산 세		(29)	0	(47)	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0	(48)	0
합계 (⑯ + ⑯ + ⑯)		(31)	13,594,967	(49)	0
기 납 부 세 액		(32)	4,082,315	(50)	0
납부(환급) 할 종 세 액 (⑯ - ⑯)		(33)	9,512,652	(51)	0
납부특례세액	차감	(34)	0		
	가산	(35)	0	(52)	0
분납할세액	2개월 내	(36)	0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세액 (⑯ - ⑯ + ⑯ - ⑯)		(37)	9,512,652	(53)	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18일

신고인 이***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박***

(서명 또는 인)

동대문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30			
② 일련번호	1			
③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KR	
④ 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711-59-002**			
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⑦ 신고유형코드	간편장부			
⑧ 주업종코드	701201			
⑨ 총수입금액	36,300,000			
⑩ 필요경비	35,134,011			
⑪ 소득금액(⑨ - ⑩)	1,165,989			
⑫ 과세기간개시일	2020.01.01			
⑬ 과세기간종료일	2020.12.3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 주택수(개)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⑲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36,300,000	35,134,011	1,165,989
주택임대소득				
합 계	0	36,300,000	35,134,011	1,165,989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⑧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포함) 외의 사업소득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손금공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0		0		0
배당소득금액	0		0		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0		0		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1,165,989		0		1,165,989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0		0		0
근로소득금액	92,142,470		0		92,142,470
연금소득금액	0	0	0		0
기타소득금액	0	0	0		0
합 계 (종합소득금액)	93,308,459		0		93,308,459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 액	
부동산임 대업의 사 업소득 (주택임대 업 제 외)							
부동산임 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 업 포 함)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 본 인	1,500,000	연 보 공 험 금 료 제	⑨ 국 민 연 금	2,358,420
	추 가 공 제	② 배 우 자	0		⑩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연금	0
		③ 부 양 가 족(0 명)	0		⑪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0
	특 별 공 제	④ 70세 이상인 자(0 명)	0	특	⑫ 보 험 료 공 제	3,203,220
		⑤ 장 애 인 (0 명)	0	별	⑬ 주 택 자 금 공 제	1,003,611
		⑥ 부 녀 자	0	공	⑭ 기 부 금 (이 월 분) 공 제	0
		⑦ 한 부 모 가 족	0	제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⑯) 4,206,831
(8)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1,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⑯)	

⑯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종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종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 =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⑯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⑰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제 1 2 6 조의 2(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111	3,697,287	
⑭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3,697,287	
⑮ 소득공제 합계 (⑧ ~ ⑪ + ⑯ + ⑰)	11,762,538	⑯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금액 (㉠)	적용률 (㉡)	③ 세액공제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203			500,000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명) (출산·입양명)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12% (15%)		
보험료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277	1,000,000	12%	120,000
의료비				15%	
교육비	278	907,032	15%	136,054	
특별세액제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15% (30%)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100/110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소득세법+⑤조세특례제한법)			756,054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15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0
		수입금액		14/10,000	
② 과소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0
		수입금액		7/10,000	
③ 납부지연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0
		수입금액		14/10,000	
	부당감면·공제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공제세액		40/100	
④ 보고불성실	미납	일수	()		
	미납부(환급)세액			25/100,000	
⑤ 증빙불비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2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2/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외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미전송	공급가액	(5/1,000)	
		전자계산서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3/1,0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소	계			
⑨ 무기장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3/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위장가공·발급수취금액			2/100	
	미가맹수입금액			1/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급거부·불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⑭ 동업기업배분가산세	위장가공·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금액			20/100 (10/100)	
⑮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영수증불성실판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0

구분	소특세	농어촌특별세
증간예납세액	①	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0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0
수시부과세액	④	0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0
	근로소득	4,082,315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기납부세액합계	⑪	4,082,315
	⑯	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8.3.2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2020 귀속)

① 주 소 지				② 전 화 번 호
③ 성 명	이***			④ 생 년 월 일 1986-11-27
사업장	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		
	⑥ 업 종	부동산업		
	⑦ 주 업 종 코 드	701201		
	⑧ 사 업 자 등 류 번 호	711-59-002**		
	⑨ 과 세 기 간	01.01. 부터		
		12.31.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 32 , 40)		
총 수 입 금 액	⑪ 장 부 상 수 입 금 액	36,300,000		
	⑫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0		
	⑬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0		
	⑭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⑪ - ⑫ + ⑬)	36,300,000		
필 요 경 비	⑮ 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 표 ⑪ 의 금 액)	35,134,011		
	⑯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0		
	⑰ 필요경비에서 가산할 금액	0		
	⑱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 - ⑯ + ⑰)	35,134,011		
⑲ 차 가 감 소 득 금 액 (⑭ - ⑱)	1,165,989			
⑳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			
㉑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0			
㉒ 해 당 연 도 소 득 금 액 (⑲ + ㉑ - ㉒)	1,165,989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제 출 인

이***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박***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개정 2018.3.2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20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이***		④생년월일	1986-11-27
사업장	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	
	⑥ 업 종	부동산업	
	⑦ 주 업 종 코드	701201	
	⑧ 사업자등록번호	711-59-002**	
	⑨ 과 세 기 간	01.01부터 12.31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 32 , 40)	(30 , 32 , 40) (30 , 32 ,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36,300,000	
	⑫ 기 타	0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36,300,000	
매 출 원 가	⑭ 기초재고액	0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⑯)	0	
	⑯ 기말재고액	0	
	⑰ 매출원가(⑭+⑮-⑯)	0	
제 조 비 용	⑲ 기초 재고액	0	
	⑳ 당기 매입액	0	
	㉑ 기말 재고액	0	
	㉒ 당기 재료비 (⑲+⑳-㉑)	0	
	㉓ 노 무 비	0	
	㉔ 경 비	0	
	㉕ 당기제조비용 (㉒+㉓+㉔)	0	
	㉖ 급 료	0	
필 요 경 비	㉗ 제 세 공 과 금	1,924,844	
	㉘ 임 차 료	0	
	㉙ 지 급 이 자	12,281,495	
	㉚ 접 대 비	0	
	㉛ 기 부 금	0	
	㉜ 감 가 상 각 비	19,360,042	
	㉝ 차 량 유 지 비	0	
	㉞ 지 급 수 수 료	1,300,000	
	㉟ 소 모 품 비	0	
	㉟ 복 리 후 생 비	0	
일 반 관 리 비 등	㉟ 운 반 비	0	
	㉟ 광 고 선 전 비	0	
	㉟ 여 비 교 통 비	0	
	㉟ 기 타	267,630	
	㉟ 일반관리비등계 (㉟ ~ ㉟ 의 합계)	35,134,011	
	㉟ 필요경비 합계 (㉟+㉟)	35,134,011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	주민등록번호	861127-*****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711-59-002**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세대주 [<input type="checkbox"/>]세대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코드: KR)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거주자 [<input type="checkbox"/>]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12% [<input checked="" type="checkbox"/>]100% [<input type="checkbox"/>]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및 소득 · 세액 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고용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0명)		O					국세청		7,923,352		6,027,620	
0	이***	0					기타		3,203,220			
1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계	3월 4~7월 그 외	1,531,583 5,793,815 18,094,779	329,710 14,424,683 7,545,247	233,150 483,300 157,400	0 0 0	109,859 18,300 529,500	0 98,700 10,000	0
기타계	3월 4~7월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세청계	3월 4~7월 그 외							
기타계	3월 4~7월 그 외							
국세청계	3월 4~7월 그 외							
기타계	3월 4~7월 그 외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358,420	전액 2,358,420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358,420		2,358,420	
III.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682,950	전액 2,682,95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520,270	전액 520,270	
	보험료 계			3,203,220		3,203,22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20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이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8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9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20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제5장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25,420,177			
	② 직불 · 선불카드		사용금액	873,850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2,299,640			
	④ 도서 · 공연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657,659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108,700			
	계(①+②+③+④+⑤+⑥)			49,360,026		3,697,287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증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구분	세액감면 · 공제명세			세액감면 · 공제 명세					
V.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정부간 협약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세조약 상 감면 감면기간 만료일 제출일 제출일					
			종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공제 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금액 납입금액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연금계좌 계						
	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계	보험료 보험료 7,923,352	100만원	1,000,000	12%	120,000	
		의료비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난임시술비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계	지출액 지출액 지출액 6,027,620	작성방법	907,032	15%	136,054	
							20%		
							15%		
		특별세액공제	소득자 본인 취학전 아동 (명) 초 · 중 · 고등학교(명)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장애인 (명) 교육비 계	공납금(대학원 포함) 유치원 · 학원비 등 공납금 공납금 특수교육비	전액 1명당 300만원 1명당 300만원 1명당 900만원 전액	15%			
		기부금	정치자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 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액	작성방법	100/110	15% (25%)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신청서제출일 근무기간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신고인

이***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X)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X)
3. 연금 · 저축 등 소득 ·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X)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X)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X), ② 기부금명세서 (X), ③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